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학적 사유·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제1항의 시행령 위임 규정에 따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의견 조회 예정 (2024. 10월)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 11월) 예정,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 등) 모자보건법 제11조의
7제1항에 따른 의학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부 칙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3조의2(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 등) 모자보건법 제11 조의7제1항에 따른 의학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 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395